

투자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

- 당사는 『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』에 따라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가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하여 그에 따릅니다.
- 투자자에 대한 통지 외에도 1년간의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한국 거래소의 기업공시 채널에 공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도 주요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연 1회 공시합니다.